

2023년 1분기 클린카드 사용내역 점검결과

(감사담당관실 '23. 4. 27.)

I 클린카드 사용내역 점검 개요

□ 실시근거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
- 「클린카드 비리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」 제도 개선 권고

□ 점검 개요

- 대상 : 본청 9개(1관5국,1정책관,1심의관,1과), 소속기관 7개(교육원,개발원,5지방청)
- 점검대상 기간 : '23년 1분기(1. 1. ~ 3. 31.)
- 점검자 : 청렴담당 사무관 등 8명

□ 주요 점검사항

- 예산목적 외 사용여부
 - 클린카드 사용 제한 업종(유흥주점, 골프장, 노래방 등) 이용 여부
 - 일반수용비·업무추진비·국내여비 등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집행 여부
 -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 적정성 등
- 업무와 무관한 시간 및 장소에서 사용
 - 심야 및 휴일에 결제, 자택 인근에서 사용 등
 - 출장 및 휴가기간 중에 법인카드 사적 사용
- 기타 불합리한 카드 결제 등
 - 동일일자, 동일 거래처 반복 사용(분할 결제)
 - 물품구입·여비에 대한 불필요한 선급처리, 계획대비 과집행 등

II 클린카드 사용내역 점검 결과

< 총 평 >

- '23년 1분기 클린카드 점검 결과, 업무와 무관한 시간(심야시간)에 업무 추진비 사용사례 2건, 예산과목 착오사례 2건 발생

< 최근 5개년 클린카드 점검결과 현황 >

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
예산과목 착오	9	12	3	3	3
예산집행 부적정	-	1	2	1	2
기타	-	2	1	2	1

-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통보 및 회계담당자 교육 실시

□ 클린카드 사용내역 점검결과

- 예산목적 외 사용여부
 - 해당 사업명에 맞지 않는 예산과목으로 집행 : 2건
 - 클린카드 사용 제한 업종 이용 : 없음
- 업무와 무관한 시간 및 장소에서 사용
 - 심야 및 휴일 결제, 자택 인근에서 결제 : 2건
 - 출장 및 휴가기간 중 법인카드 사적 사용 : 없음
- 기타 불합리한 카드 결제 등
 - 동일일자, 동일 거래처 분할결제 등 반복사용 : 없음
 - 불필요한 선급처리, 계획 대비 과집행, 그 외 기타 : 없음

□ 세부 점검결과

- 통계청 △△과에서는 '부서 현안업무 보고 후 만찬('23.2.8. 23:23)'과 '부서 ○○업무 보고서 작성협의 후 만찬('23.3.29. 23:00)' 명목으로 심야시간 대에 업무추진비를 집행
 -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시, 업무와 무관한 시간대에 사용하면 안되며, 비정상시간대(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)에 사용할 경우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함*

* 관련근거 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(제도개선의 권고),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 4.업무추진비(240목)

<표1> 심야시간대 업무추진비 집행 건

소속	집행 내용					비고
	사용 일시	가맹점명	금액(원)	제목(지급건명)	예산과목	
통계청 △△과	'23.2.8. 23:23	▽▽ 김치점	180,000	부서 현안업무 보고 후 만찬	*****-240-02 ■ ■ 기본경비 관서업무추진비	심야시간 업무추진비 집행
	'23.3.29. 23:00	□□치킨	55,000	부서 ○○업무 보고서 작성협의 후 만찬		

☞ 향후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에 의거하여, 심야시간대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대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

○ ○○원(국) ●●과에서는 '제 00회 통계행사 개최 위탁운영 사업 제안서 기술평가 운영 용품비 지급('23.3.2. 12:20)' 명목으로 '◎◎마트(대형할인점)'에서 유류비(210-08)로 집행하였음

-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(기획재정부)」에 따라 경상적 성격의 물품(회의물품 등)은 일반수용비(210-01)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함

<표2> 예산과목 착오 집행 건

소속	집행 내용					비고 (적정과목)
	사용 일시	가맹점명	금액(원)	제목(지급건명)	예산과목	
○○원(국) ●●과	'23.3.2. 12:20	◎◎마트	49,360	제 00회 통계행사 개최 위탁운영 사업 제안서 기술 평가 운영 용품비 지급	*****-210-08 ◆ ◆ 기본경비 유류비	210-01 일반수용비

○ ◆◆지방통계청 ◇◇사무소에서는 '2023년 ○○조사 업무담당자 간담회 식대('23.3.17. 12:58)' 명목으로 '▽▽식당(일반음식점)'에서 일반수용비(210-01)로 집행하였음

-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(기획재정부)」에 따르면, '각종 소모품 및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일반수용비(210-01목)로 사용해야 한다'고 명시되어 있음

- 하지만, ▽▽식당(일반음식점)에서 물품구입은 경상적 성격의 물품이라고 볼 수 없으며, 관서업무추진비(240-02)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함

<표4> 예산과목 착오 집행 건

소속	집행 내용					비고 (적정과목)
	사용 일시	가맹점명	금액(원)	제목(지급건명)	예산과목	
◆◆지방 통계청 ◇◇사무소	'23.3.17. 12:58	▽▽식당	100,000	2023년 ○○조사 업무담당자 간담회 식대	*****-210-01 △△통계작성 일반수용비	240-02 관서업무 추진비

III 향후 계획

-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통보 및 관련담당자 교육
- 향후 클린카드 사용내역 점검시 유사사례 중점 확인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점 검토